

2020년도 제1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17.(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0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81건(안건번호 제2020-46882호~4783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46882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46883호~46897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4689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1982년도에 공표된 홍콩 무협 영화를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침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권리자나 민원인이 신고한 건이 아닌 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36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534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36269호~37802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6개, 총 1,53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0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공개 여부 및 제2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의 OSP명, 6쪽의 저작물명, 블로그명, 사이트 주소, 7쪽의 사이트명,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9쪽의 권리자명, 10쪽의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저작물명, 공표일자, 실연자명, 게시물 내용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해당 정보는 민원인 신고 건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비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2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저작권보호심의위

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부분은 전부 공개함.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OSP명, 저작물명, 블로그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게시물 내용,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권리자명, 공표 일자, 실연자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4쪽~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위너브라더스', '학산문화사', '유니버설픽쳐스', '어도비 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tvN', '월트디즈니컴퍼니', '소니픽쳐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위원, C 위원, D 위원, A 위원: 해당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 중 제척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 등 4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38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2020-46882호~4783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6882호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가 영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5개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각 링크를 클릭하면 '■■■■ ■■ ■■■■■'에서 영화 '★★★★★ ★★★★★'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영화는 ○○○○. ○. ○○. 개봉한 영화로 총 153분 분량인데, 5개 링크는 약 31분 분량씩 나누어져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영화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케이터링 업체, 미용실, 식당, 학원 등 10개의 '파워링크' 광고가 게재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는 게시글을 통해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 성원영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이 ‘◇◇◇◇ ◇◇’에서 “♥♥♥♥♥ ♥” 등을 검색하여 보았지만 본 건 영상물과 동일한 영상을 찾을 수 없었음.
- B 위원: ‘●●●●●’ 사이트에서도 영상 검색이 어려움.
- A 위원: 링크를 통해서만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일반 이용자들은 ‘◇◇◇◇ ◇◇’의 URL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해야 이용 가능함. 심의 대상 게시물에서는 링크 URL 주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음. 만약 심의위원회가 영상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권고한다면, 링크 자체는 무용지물이 될 것임. 하지만 민원인이 링크 설정 게시물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는 원천 게시물이 아닌 링크가 설정된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음.
- A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URL을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본 건 영화가 위치한 웹페이지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음. 원천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함.
- B 위원: 외부인이 ‘◇◇◇◇ ◇◇’, ‘◆◆◆◆◆’ 등에서 검색하여 영상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게시자가 직접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봐야 함. 게시자가 링크를 깊숙이 숨어 놓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링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위원회는 ‘◆◆◆◆◆’, ‘▣▣▣▣▣▣’ 등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가 해외 서버에 있는 링크 설정 게시물을 주로 심의해왔음. 이와 달리 본 건은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와 링크 설정 게시물이 모두 국내 서버에 있어 국내 법의 역외적용 문제가 없고 보호원의 행정력이 두 사이트 모두에 미치는 사안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의 건이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보호원은 국내 서버가 원천 게시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링크 설정 게시물이 아닌 불법복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함.
- A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향후에는 불법복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자체를 심의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링크 5개를 제공한 해당 안전은 링크 설정 행위자와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가 동일인인 경우로 보이는 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음. 링크 설정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며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688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6883호~46897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 도구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최신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 게시물수는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동일인의 게시자가 복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46883호~4689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B 위원: 모두 책으로 발간된 만화들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출판사는 ●●●●●●, ■■■■■■, ▷ ▷ ▷ ▷ ▷ ▷, □□□□□, ▣▣▣▣▣▣ 등임.
- B 위원: 만화책 판매율은 여전히 높은지?
- 성원영 전문위원: 서점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화책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높아서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구매해서 볼 수 있도록 랩핑하여 판매하고 있음.
- C 위원: 책을 랩핑하여 판매하는 것은 접근통제조치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전형적인 예시에 해당함. 또한 카메라 촬영 금지 등은 이용통제조치에 해당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특별한 이견 없음.
- B 위원, A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6883호~4689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4689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1982년 공표된 홍콩 무협 영화 '대기영웅전'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영화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면서)'대기영웅전'은 1982. 2. 19. 공표된 영화임. 해당 영화의 국내 배타적발행권자 또는 exclusive licensee는 확인할 수 없음. 또한 해당 영화를 온라인상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사이트가 없음. 해외 사이트인 'Buyoyo'에서 해당 영화의 VCD를 HK \$ 54, DVD를 HK \$ 85에 판매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4689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B 위원: 유명하지 않고 오래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위원회는 고전 영화를 불법 복제·전송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다만 지난 1분과위원회에서는 1967년 공표된 스웨덴 영화 ‘▼▼▼ ▼▼▼’을 불법 복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안에 대해 해당 영상물이 공표된 지 53년이 도과한 점, 과거 명작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경로가 웹하드 사이트 밖에 없어서 이용자 편익이 존재하는 점, 게시자가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자는 아니라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하였음.
- A 위원: 보호원이 직접 조사했다면 고전 영화를 모니터링하여 심의 요청하지 않았을 텐데 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하다보니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고전 영화까지 모니터링되어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기존에는 공표한 지 오래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보호원 직원이 자체적으로 필터링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음. 금번 심의에는 예외적으로 공표한 지 오래된 저작물에 대한 심의 요청이 들어온 것임.
- B 위원: 고전 영화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분과마다 의결 결과가 달라 일관성이 없음. 명확한 심의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임.

- C 위원: 해당 안전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함.
- B 위원: 해당 웹하드 사이트 이외에 본 건 영화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가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정보의 보고인 웹하드 사이트에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본 건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C 위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는 최신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온라인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러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부결 의견임.
- B 위원: 부결 의견에 동의함. 고전 영화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영화라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음. 하지만 본 건 영화는 수요가 적은 중국 고전 영화일뿐더러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 이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함.
- C 위원: 고전 영화를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임은 분명함. 그러한 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조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임. 시정권고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기보다는 관리자가 직접 사법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심의위원회가 개입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안임.

- A 위원: 국내에 합법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부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본 건 영화의 이용이 권리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음.
- D 위원: 저는 가결 의견임. 고전 영화라고 해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 부적합하다면 오래된 영화의 기준은 몇 년인지 등 반론이 제기되기 쉬움. 사실 고전 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아카이브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이용자가 국내 도서관에서 고전 영화를 신청하여 이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이용자들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고전 영화가 훨씬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됨. 영리적 관점에서도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음. 또한 고전 영화의 잠재적 수요를 무시할 수 없음.
고전 영화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복제·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타당함.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위원회는 계정 정지 심의 시 시장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시정권고 심의일이 속한 해의 1. 1.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출시 또는 공표된 저작물'인지 여부를 고려함. '최신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준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미국 법원은 '소니 사건'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콘텐츠의 종류 및 성질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판결문에는 최신 저작물,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적어지고, 다큐멘터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될 여지가 커진다는 내용이 담겼음. 이러한 판결의 내용까지 고려해야 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46898호는 3인의 위원이 부결, 1인의 위원이 가결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결한 바,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6899호~47830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그중 일부 안전을 설명하겠음.
(영화 '인비저블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6926호는 2020. 2. 26.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2020. 3. 20. VOD 서비스를 시작함. 제작사는 '유니버설픽처스'와 '블룸하우스', 배급사는 '유니버설픽처스'임. 2020. 6. 12. 기준 누적 관객수 574,881명임.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음.
(영화 '사냥의 시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6951호는 2020. 4. 23.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영화임.
(영화 '온워드:단 하루의 기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7118호는 2020. 6. 17. 개봉 예정인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제작사는 '월트디즈니픽처스'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고, 배급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임. 참고로 해당 영화는 2020. 2. 21. 베를린 영화제 초청작이고, 2020. 3.

6. 미국 정식개봉함.

(영화 '트롤: 월드 투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47132호는 2020. 4. 29.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2020. 6. 12. 기준 누적 관객수 150,708명임. 수입, 배급사는 '유니버설픽처스'임. 게시자는 영화의 더빙 버전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해당 영화는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VOD 가격이 기존보다 높은 22,000원에 책정되었음. VOD 가격 책정 과정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간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었다고 하나, 영화계 일각에서는 홀드백 기간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반발 의견이 다수 일어났다고 함.

(영화 '호텔 레이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7180호는 2020. 4. 29. 개봉, 2020. 5. 19. VOD 서비스 시작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언더워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7197호는 2020. 5. 27.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수입, 배급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임. 개봉 첫 주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로, 2020. 6. 12. 기준 누적 관객수 106,180명임.

- A 위원: 무료로 제공 중인 불법복제물이 다수 발견됨. 이유가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이용자들을 유인하려는 웹하드의 마케팅 전략으로 알고 있음. 무료 콘텐츠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정액권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유인책임.

(영화 '콜 오브 와일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47383호는 2020. 5. 14.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2020. 6. 4.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배급사는 '윌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임. 2020. 2. 21. 미국에서 정식 개봉함.

(영화 '범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7491호는 2020. 5. 14. 극장 동시 VOD 서비스 시작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72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블러드샷'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7534호는 2020. 5. 21.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3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수입, 배급사는 '소니픽처스'임.

(영화 '런 보이 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7617호는 2020. 5. 28.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84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6. 3.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그루지 2020'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7686호는 2020. 1. 3.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국내 극장개봉 예정 없으며, 2차 매체로 직행할 예정이라고 함. 제작사는 '고스트하우스픽처스'이고, 배급사는 '소니픽처스'임. 원작은 2004년 개봉한 일본 영화 '그루지'임.

(영화 '리듬 오브 리벤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7700호는 국내 극장에서 미개봉한 영화 '리듬 오브 리벤지'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2020. 5. 1.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참고로 2020. 1. 31. 미국에서 개봉하고, 2020. 2. 21. 영국에서 개봉한 영화임.

(게임 '비시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7821호는 2020. 2. 18. 출시된 게임을 웹하드에서 84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제작, 배급사는 '스파이더링 스튜디오'이며, 정품 판매가는 15,500원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 안전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46899호~4783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 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46899호~4783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6899호~47830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4689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46882호~46897호, 제2020-46899호~4783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9쪽부터 2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2020-36269호~37802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1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0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24.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